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01
----------	------

발의연월일 : 2017. 7. 19.

발의자 : 이학영 · 박광온 · 윤호중

한정애 · 이원욱 · 김상희

남인순 · 김현권 · 김영주

양승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그런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체제 내에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반지주회사는 소속 자회

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됨.

이는 당초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산분리 규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하며,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됨.

따라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